# 임금채권보장법

[시행 2024. 8. 7.] [법률 제20233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 (퇴직연금복지과) 044-202-7563,7564

제1장 총칙 <개정 2007. 12. 27.>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,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. 20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1. 27., 2020. 12. 8.>
  - 1. "근로자"란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  - 2. "사업주"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  - 3. "임금등"이란「근로기준법」제2조・제34조・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・퇴직금・휴업수당 및 출산전 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.
  - 4. "보수"란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7.]
- **제3조(적용 범위)** 이 법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### 제3조의2

[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<2007. 12. 27.>]

제4조(준용)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"이라 한다) 제3조, 제5조제4항 · 제5항,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<2007.12.27>]

**제5조(국고의 부담)**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4조에서 이동,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<2007.12.27>]

- 제6조(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)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0. 6. 4.>
  -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,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각각 같은 수로 한다.<개정 2020. 5. 26.>
  -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, 12, 27.]

[제5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<2007.12.27>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<개정 2007. 12. 27.>

- 제7조(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「민법」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14. 3. 24., 2015. 1. 20., 2021. 4.
  - 13.>
  - 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  - 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
  - 3.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4.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 정 등이 있는 경우
    - 가.「민사집행법」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
    - 나. 「민사집행법」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
    - 다. 「민사집행법」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, 청구의 인낙(認諾)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
    - 라.「민사조정법」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
    - 마. 「민사조정법」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
    - 바.「소액사건심판법」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
  - 5.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(이하 "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(이하 "대지급금"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0. 6. 4., 2011. 7. 25., 2015. 1. 20., 2020. 12. 8., 2021. 4. 13.>
  - 1.「근로기준법」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
  - 2. 「근로기준법」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(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)
  - 3. 「근로기준법」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(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)
  -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,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개정 2021. 4. 13.>
  - 1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
  - 2.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
  - 3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
  - 4.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
  -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13.>
  -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,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0. 5. 25., 2010. 6. 4., 2015. 1. 20., 2021. 4. 13.>
  -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0. 5. 25., 2010. 6. 4., 2015. 1. 20., 2021. 4. 13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(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)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21, 4, 13,>
-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 5. 25.,</li>2015. 1. 20.,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.]

[제목개정 2021. 4. 13.]

[제6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2007. 12. 27.>]

[시행일: 2021. 6. 9.] 제7조제3항(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)

- 제7조의2(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(이하 "재직 근로자"라 한다)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「민법」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·청원·탄원·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
  - 2.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
  - 3.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
  -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.
  -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,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 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- 1.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
  - 2.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
  -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(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)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13.]

[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<2021.4.13>]

- 제7조의3(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4. 2. 6.>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(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.<신설 2020. 12. 8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12. 8.>
 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, 금액,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12. 8.>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[제목개정 2020. 12. 8.]

[제7조의2에서 이동 <2021. 4. 13.>]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8조(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(代位)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>
  - ②「근로기준법」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.<개정 2011. 7. 25.,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07.12.27>]

- 제9조(사업주의 부담금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, 2024. 2. 6.>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<개정 2010. 1. 27., 2010. 6. 4.>
  -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(勞務比率)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.<개정 2010. 1. 27., 2021. 4. 13.>
  -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"공단"을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본다.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>
  -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신설 2018. 10. 1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<2007.12.27>]

- 제10조(부담금의 경감)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11.
  - 7. 25., 2024. 2. 6.>
  - 1. 삭제 < 2014. 3. 24.>
  - 2. 「근로기준법」 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
  - 3.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,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, 같은 법 제4장 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
  - 4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·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<2007.12.27>]

- 제11조(대지급금수급계좌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"대지급금수급계좌"라 한다)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장애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13.>
  -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 4. 13.>
 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1. 4. 13.>

[본조신설 2020. 12. 8..]

[제목개정 2021. 4. 13.]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[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<2020. 12. 8.>]

- 제11조의2(수급권의 보호)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1. 20,, 2021. 4. 13.>
  -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21. 4. 13.>
  -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<개정 2021. 4. 13.>
  -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<신설 2020. 12. 8.,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1조에서 이동 <2020. 12. 8.>]

- 제12조(체불 임금등의 확인)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13.>
  - 1. 제7조제1항제4호·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2. 「법률구조법」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「법률구조법」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.<개정 2021. 4. 13.>
  -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- 제13조(재산목록의 제출명령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6. 4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<2007.12.27>]

#### 제13조의2

[종전 제13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<2007. 12. 27.>]

- **제14조(부당이득의 환수)**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, 2012. 2. 1., 2014. 3. 24., 2020. 12. 8., 2021. 4. 13 >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3. 24., 2020. 12. 8., 2021. 4. 13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
  - 2.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
  -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10. 6. 4., 2014. 3. 24., 2021. 4. 13.>
  -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·진술·증명·서류제출 등 위계(僞計)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<개정 2012. 2. 1., 2014. 3. 24., 2015. 1. 20., 2021. 4. 13.>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전문개정 2007. 12. 27..] [제목개정 2014. 3. 24.]

[제13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<2007. 12. 27.>]

제15조(포상금의 지급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<2007.12.27>]

제16조(준용)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(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)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19조의2, 제20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3, 제23조, 제23조의2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의2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,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험가입자"는 "사업주"로, "보험료"는 "부담금"으로, "보험"은 "임금채권보장"으로, "보험사무"는 "임금채권보장사무"로, "공단" 또는 "건강보험공단"은 "고용노동부장관(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)"으로, "개산보험료(概算保險料)"는 "개산부담금"으로, "보험연도"는 "회계연도"로, "보험관계"는 "임금채권보장관계"로, "보험료율"은 "부담금비율"로, "확정보험료"는 "확정부담금"으로, "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"는 "위원회"로 본다. <개정 2009. 10. 9., 2010. 1. 27., 2010. 6. 4.,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<2007.12.27>]

#### 제16조의2

[종전 제16조의2는 제19조로 이동 <2007. 12. 27.>]

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<개정 2007. 12. 27.>

제17조(기금의 설치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, 2024. 2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<2007.12.27>]

제18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(辨濟金)
- 2.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
- 3. 제2항에 따른 차입금
- 4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- 5. 그 밖의 수입금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수 있다.<개정 2010. 6. 4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6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<2007.12.27>]

제19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0. 12. 8., 2021. 4. 13.>

- 1.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
- 2.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
- 3.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
- 4.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
- 5.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
- 6.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
- 7.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. 다만,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.
- 8.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 운용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### 제19조의2

[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<2007. 12. 27.>]

제2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 <개정 2010. 6. 4.>

②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하여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중 "보험급여"는 "대지급금"으로, "보험료수입"은 "부담금수입"으로 본다. <개정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7조에서 이동,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<2007.12.27>]

제21조(회계연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8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<2007.12.27>]

제4장 보칙 <개정 2007. 12. 27.>

제22조(보고 등)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>

- 1. 기금의 관리 운용
- 2.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<2007.12.27>]

제23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, 제7조의 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,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,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,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(이하 "자료제공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8. 10. 16., 2020. 5. 26., 2020. 12. 8., 2021. 4. 13., 2024. 2. 6.>

- 1.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,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(이하 "체불사업주등"이라 한다)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 기사항증명서, 토지등기사항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「공탁법」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
- 2.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・초본

- 3.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요트 등 재산 자료(등록원부를 포함한다)
- 3의2.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(등록원부를 포함한다)
- 3의3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
- 4.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(콘도) 회원권, 무체재산권(특허권, 저작권 등), 서화, 골동품,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(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,「소득세법」제168조 및「법인세법」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)에 관한 자료
- 5.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),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, 일반(집합) 건축물대장, 토지(임야)대장,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·전세권·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
- 6. 「법률구조법」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소송, 보전처분,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(소장, 신청서, 판결문,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)
- 7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・국민연금・산업재해보상보험·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(체납 자료를 포함한다)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
- 7의2.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
  - 가. 「고용보험법」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
  - 나. 「고용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자료
  - 다.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자료(체불사업주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)
  - 라.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
  - 마.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
  - 바.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자료
  - 사.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45조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자료(체불사업주등이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 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)
  - 아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, 가입기간,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, 지급금액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자료(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다)
- 7의3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
  - 가. 「고용보험법」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료
  - 나. 「고용보험법」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 신고 및 실업 인정에 관한 자료
  - 다. 「고용보험법」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
- 8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, 가입 기간,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,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(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)
- 9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·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(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)
- 10.「신용보증기금법」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「기술보증기금법」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
- 11.「보험업법」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
- 12. 조달청장에게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 련 정보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1. 27., 2021. 4. 13.>
- 1. 체불사업주,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, 부당이득자(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)의 인적사항
- 2. 사용목적
- 3.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
-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<신설 2016. 1. 27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19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<2007.12.27>]

- 제23조의2(개인정보의 보호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5. 26.>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보안교육 등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5. 26.>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체불 임금등의 지급,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5. 26.>
  - ⑤ 제23조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.
  - 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,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,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,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7.]

- 제23조의3(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5조제 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"이라 한다)이 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(이하 "미회수자료"라 한다)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사업주의 사망・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  - 2.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,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·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·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2. 6.]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4조(검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(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, 2021. 4. 13.>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개정 2021. 4. 13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20조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<2007.12.27>]

**제25조(신고)**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21조에서 이동,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<2007.12.27>]

- 제26조(소멸시효)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·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 <개정 2021. 4. 1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  -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.<개정 2021. 4. 13.> 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22조에서 이동,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<2007.12.27>]

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공단 및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

27., 2010. 6. 4., 2024. 2. 6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23조에서 이동 <2007.12.27>]

제5장 벌칙 <개정 2007. 12. 27.>

- **제27조의2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4. 2. 6.>
  - 1.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
  - 2.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・제공하거나 누설한 자

[본조신설 2016. 1. 27.]

- **제28조(벌칙)**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2. 2. 1, 2014. 3. 24, 2021. 4. 13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・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·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
  - 3. 삭제 < 2021. 4. 13.>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신설 2014. 3. 24, 2021. 4. 13.>
  - 1. 부당하게 제7조・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・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・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・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 [제24조에서 이동 <2007.12.27>]

제29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9. 1. 7.]

**제30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1. 4. 13.>

1. 삭제 < 2015. 1. 20.>

1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
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 짓 서류를 제출한 자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・징수한다.<개정 2010. 6. 4.>
- ③ 삭제<2012. 2. 1.>
- ④ 삭제<2012. 2. 1.>
- ⑤ 삭제<2012. 2. 1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[제26조에서 이동 <2007.12.27>]

부칙 <제20233호,2024. 2. 6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불 임금등의 융자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미회수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